

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①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5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강서구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<u>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고</u>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.</p> <p>1. 생략</p> 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, 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의회에서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에</u>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본회의에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검사위원(장)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